

○○○경찰서 / ○○○검찰청

주소:

전화:

팩스:

(접수번호 / 사건번호)

수 신 자

귀하

제 목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

아래 사람에 대하여 . . . (죄명) 사건으로 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경찰서 / ○○○검찰청 성명/직급

(서명 또는 인)

신 상 정 보 공 개 대 상 자	성 명	
	주 민 등 록 번 호	
공 개 예 정 일	년 월 일	

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또는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